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¹⁾

최푸름 | University of Debrecen, LL.M

2020년 6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함으로써,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배경

- 원고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자전거 회사임. 원고는 자전거를 접는 기술인 ‘폴딩 자전거’를 개발하여 해당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을 특허 출원함. 특허는 현재 소멸된 상태임. (이하, ‘이 사건 디자인’)

1) [사법재판소 법무관, 기술적 목적을 위한 자전거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의 후속 동향임.

사실 관계

- 원고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자전거 회사임.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디자인’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전거와 유사한 디자인의 폴딩 자전거를 생산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벨기에 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벨기에 법원은 상기 사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함.
- 선결 판결 요청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서로 다른 기술적 디자인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자전거를 접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이 모두 동일해야만 하는지의 여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현재는 만료된 원고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피고가 추구하는 기술적 결과를 얻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 법무관은 ‘이 사건 디자인’의 목적은 기술적인 면모, 즉 자전거를 접는 기능을 위해 구현된 기술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련 법령 및 판례

- 베른 협약²⁾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학·예술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중략-)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포함함.

2)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동 조항 제7항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저작물·디자인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함.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³⁾ (WCT) 제1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어떠한 조항도 베른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적 상호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수 없음.
-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⁴⁾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저작권자가 가진 독점적 권리 중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 복제할 권리, 배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9조는 상기 지침이 특허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함.
- Cofemel 판례⁵⁾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지침 위반임.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의 유일한 조건은 독창성이라고 규정함. 또한 저작물이 타 저작물과 구분되는 식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선결 판결 요청에서 먼저 제기된 두 질문, 즉 서로 다른 기술적 디자인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의 여부와 ‘자전거를 접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이 모두 동일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묶어서 판결함. 법원은 유럽 정보사회지침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술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WIPO Copyright Treaty

4)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5) C-683/17, Cofemel v G - Star Raw CV

고 판시함.

- 특히, 판결문의 39번째 문단에서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갖춘다면 저작권 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의 자전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3번째 선결 판결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또한 Cofemel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의 유일한 요건은 창작성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기술적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유럽 연합 판례법 위반임.

평가 및 전망

- 상기 판결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저작물의 조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 판결은 특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디자인이 저작물로서 기능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선결 판결에 대한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사법재판소의 고유한 논리적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현재 유럽 연합에서 ‘저작물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법무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현상을 암시하고 있음.

참고 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2730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467220>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7668&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328155>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오혜민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
박사과정

2020년 6월 17일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저작권보상금 분배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표(Tarife)에 대한 행정처분
 - 원고는 사적방송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고 있는 저작권신탁단체 중 하나임. 원고는 저작권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협정금액표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있었음.
 - 2013년 4월 12일 원고는 연방관보에 라디오방송 재생 등과 관련한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본 협정금액표를 공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20일 감독기관인 독일상표특허청(Deutsche Patent- und Markenamt)는 원고의 협정금액표는 부적절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심의함. 원고는 이에 불복함.
- 항소법원의 판단
 - 항소법원은 감독기관이 원고의 협정금액표가 부적절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

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추정을 위한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의가 제기된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철회하도록 결정하였음.

- 그러나 원고의 협정금액표의 공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는 판시를 내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단

○ 감독기관의 권한

-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가 존재하며, 특히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표한 저작권보상금 협정금액표가 법규에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존재함. 그러므로 감독기관의 의결은 저작권이행법 제19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음.

○ 저작권신탁단체의 의무 불이행

- 항소법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을 책정하여야 함.
- 더 나아가, 협정금액에 따른 금액은 법규에 의거하여 합리적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협정금액표에서는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에 따른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원고는 법규에 따른 협정금액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함.

○ 감독기관의 심의의 부적절성

- 다만, 저작권보상금 협정금액표와 저작권신탁단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협정금액에 따른 금액의 범위의 적절성 여부의 판단 없이는 결정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의 감독기관은 협정금액의 범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원고의 협정금액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하였음. 이러한 감독기관의 판단은 부적절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감독기관의 심의결과는 철회되어야 함.

관련 법규

○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rhWG)은 총 4장, 2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연방법임. 저작물의 사용, 이용 동의 또는 저작권보상금과 관련하여 저작권신탁단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와 규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저작권이행법은 제3장에는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규정이 제18조부터 제20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음.

○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제19조

- 본 판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제19조는 저작권신탁단체의 감독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음.
- 본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본 법에 따라 저작권신탁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법 제19조 제2항에 제2문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본 법 제19조 제3항은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이 저작권신탁단체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또한 명시하고 있음.

시사점

- 독일은 개별 연방법 체계에 저작권신탁단체의 감독기관과 감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존재함.
-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을 징수 및 분배함에 있어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bverwg.de/de/pm/2020/32>

<https://bit.ly/31IDM2G>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45/>

<https://www.bverwg.de/suche?lim=10&start=1&db=t&q=8%20C%207.19>



퀄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최종모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2020년 6월 8일 독일 퀄른지방법원은 원고 Warner Bros. Entertainment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의 가입자가 본인의 무선통신에 암호 등을 설정하지 않아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에 암호설정 등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 무선통신 가입자의 행위는 “불법 파일 공유”에 해당하고 해당 무선통신 가입자의 주소를 공급자로 특정하여 무선통신 가입자의 어머니에게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원고는 Warner Bros. Entertainment이며, 피고는 무선통신 가입자의 어머니이며, 무선통신 가입자는 피고의 자녀이며, 무선통신 가입자의 주소가 가입자의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따라 행위자의 어머니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컴퓨터가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무선통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가입한 무선통신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원고의 영상 저작물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되게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고문구와 함께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일시

금의 보상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무선통신에 암호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 파일공유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보유자로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함.
- 무선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 (Deutsche Telekom)은 무상으로 무선통신을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의 어머니인 피고의 주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

퀄른지방법원의 판결

- 퀄른지방법원은 피고의 자녀가 자신의 무선통신에 암호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 이외의 자가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때 피고가 해당 무선통신을 제3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제3자가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을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결정하였음.

평가

- 해당 선례는 독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무선통신 가입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을 부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저작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으면,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무선통신의 가입자 등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판결은 무선통신 제공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등에게도 본인이 가입한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암호 설정 등을 하여야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heise.de/news/Freifunk-Stoererhaftung-Raubkopier-Oma-ohne-PC-muss-fuer-Filesharing-blechen-4782816.html>

<https://www.sueddeutsche.de/digital/wlan-hotspots-stoererhaftung-telemediengesetz-bundesregierung-bericht-1.4692934>

<https://www.verbraucherzentrale.de/wissen/digitale-welt/mobilfunk-und-festnetz/stoererhaftung-besserer-schutz-fuer-wlanbetreiber-19261>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일본레코드협회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의 조기 개시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배경

- 5G 시대를 맞이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의 보급이 상정됨.
- 새로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웹 방송에 관계된 권리 처리 원활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2006년 10월부터 방송프로그램 스트리밍 송신에 관한 집중관리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온 일본레코드협회는 2019년 3월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저작권등관리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함.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에 관계된 일본레코드협회의 집중관리사업 범위〉

2006년 10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송신, TV 방송프로그램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
2009년 4월	방송프로그램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에 관계된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의 일괄 허락
2014년 4월	TV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송신
2017년 4월	TV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용 스트리밍 송신
2018년 7월	지상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

- 2020년 6월 10일 일본레코드협회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사용료 규정안의 내용

-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송신가능화하는 경우¹⁾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소비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①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비(非)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i) 음성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로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20% 초과 50% 이하	정보로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7.8%	1시간당 3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로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3.1%	1시간당 1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ii)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 (iii)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50% 초과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8.7%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 다만 위의 (i) 및 (ii)는 곡 수 제한, 송신횟수 제한,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사전고지금지, 채널 자동 전환 금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50% 초과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9.0%	1시간당 9.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7.2%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5.4%	1시간당 1.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3.6%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100,000엔으로 한다	

[②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①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 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엔'으로 바꿔 적용함.

평가 및 동향

-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를 집중관리사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의의가 있음.
- 일본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관리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힘.

참고 자료

<https://www.riaj.or.jp/f/news/bc/index.html>

<https://www.riaj.or.jp/news/id=257>

https://www.riaj.or.jp/f/pdf/Web_Shiyouryoukitei.pdf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서 새 남(XU SAINAN)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 원고인 베이징유투가시영상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北京优图佳视影像网络科技有限公司)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임. 피고인 베이징락투회성네트워크기술유한책임회사(北京乐途汇诚网络技术有限责任公司)는 중국에서 도메인 네임이 “lotour.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원고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베이징인터넷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700위안(한화 약 1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음. 피고는 배상금이 높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음.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하 “2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1심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판시내용

-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배상금액 산정기준
 -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 중국 현행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금액은 저작권자의 실제손실 또는 저작권 침해자의 불법소득에 따라 산출해야 함.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침해행위의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손실 및 피고의 불법소득 증거가 없는 경우에 1심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시간적 및 경제적 창작원가, 창작 난이도, 촬영 난이도, 피고의 주관적인 고의 및 이미지의 사용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위안의(한화 12만원) 경제적 손실액을 산정하였음.
 - 2심 법원이 상기요인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해당 이미지가 한 다리(구조물)의 야경이며, 입장료와 같은 경제적 원가나 순간포착을 위한 시간적 원가가 따로 없고, 창작난이도로 볼 때 뛰어난 촬영기술도 필요 없으며, 피고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분명히 이를 선택하고 편집한 점에 있어 주관적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정하였음.

평가

- 인터넷 업계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업계와 관련된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미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은 그중의 한 유형이 됨.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 증거가 없이 배상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법조항에 명시된 요인은 없지만, 실무계에서 이미 창작원가, 창작난이도, 촬영난도 등 유형화된 산정요인이 존재함.

참고 자료

<http://bjzc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20/05/id/5172717.shtml>